

제 120 호
1982. 7. 1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편집 : 공 보 관 전 열 호
전화 :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25-6090

시 보

차 례

- 규 칙
 - 제 1982 호 :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개정규칙..... 3
- 고 시
 - 제 26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 3
 - 제 269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..... 4
 - 제 270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 5
 - 제 271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..... 7
 - 제 272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실효및결정..... 8

(이견계속)

공 합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	공	고	
	제	31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	9
	제	317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.....	10
	제	320 호 : K·S 표시정지처분공고.....	11

◎ 사 령

규 칙

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7.19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982 호

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
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4 조 제 3 항중 “또는 결원보충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2 조 및 제 13 조를 “결원보충 또는 승진임용등,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2 조, 제 13 조, 제 55 조 및 제 82 조”로 한다.

제 55 조 제 1 항중 단서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승진단위기관간의 직급별 결원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기관단위별 결원 범위내에서의 승진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진 단위기관별 정원비례에 의거 승진예정 인원을 균형배정하여 기관단위별로 승진임용케하거나, 행정직 심사 승진을 제외하고는 시 전체 단일 승진 후보자

명부에 의거 시장이 승진 임용할 수 있다.

제 82 조 제 1 항중 “작성하되”를 “작성하거나 제 55 조 제 1 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시장이 시전체 직급별 단일명부로 작성하되”로 “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”를 “만점으로 한다. 다만,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68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('82.2.3)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6 호('82.3.27)로 지적 승인된 성동구 자양동 591 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('81.12.31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7.16

서울특별시장

<p>1. 사업의 시행지 :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591번지 일대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◦ 종류 - 도시계획사업 (학교) ◦ 명칭 - 능동국민학교 신축공사</p> <p>3. 사업의 규모 : 시행면적 7,604.8평방미터</p> <p>시설 지하 279 평방미터</p> <p>1층 1,268 "</p> <p>2층 1,067.8 평방미터</p> <p>3층 1,067.8 "</p> <p>4층 1,067.8 "</p> <p>옥탑 73.75 "</p> <p>계 4,824.2 평방미터 (1,459.1평)</p> <p>4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-7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</p> <p>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◦ 착수 '82.4 ◦ 준공 '84.6.15</p> <p>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</p> <p>7.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 설계도서 : 별첨생략</p>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69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</p> <p>서울특별시 고시 제 378호 ('77.10.27)</p>	<p>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된 돈암동 173-1의 23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호 ('79.12.10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변경되었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1982.7.16</p> <p>서울특별시</p> <p>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 돈암동 173-1의 23필지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</p> <p>다. 사업의 면적 및 규모</p> <p>1) 당초 면적 및 규모 ◦ 지하 1층, 지상 2층 (2,617㎡) ◦ 지하 1층, 지상 4층, 옥탑 (5,224.75㎡)</p> <p>2) 변경 면적 및 규모 ◦ 지하 1층, 지상 2층 (2,617㎡) ◦ 지하 1층, 지상 5층, 옥탑 (6,558.50㎡)</p> <p>라. 사업의 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73-1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</p> <p>마. 공사기간 : '82.7 - '83.12.31</p> <p>바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</p> <p>*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.</p>
--	---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70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('82. 2.3) 로 도시계획 시설(학교) 결정 및 동 고시 제 120 호('82. 3.22) 로 지적승인된 강동구 길동 371-1 의 18 필지 8,397.6 (2,540.2 평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('81.12.31)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학교)을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7.16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강동구 길동 371-1 번지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도시계획사업(학교)
- 서울천동국민학교

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라. 사업규모 및 면적

- 지적 8,397.6 ㎡ (2,540.2 평)
- 건축면적 1,096.85 ㎡
- 건축연면적 4,033.7 ㎡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'82.8.15 ~ '84.8.15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(별첨)

사.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(별첨)

아. 시행허가 설계도서 생략

서울특별시장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서

명칭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서
서울	강동구	371-1	대	209.2	없음
천동	길동	372-1	"	371.3	"
국민학교		371-2	"	240.7	"
		371-3	"	350.3	"

11-6 제 920 호 시 보 1982.7.16

명칭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이외의 권리명세
		371-5	대	415.7		없음
		371-7	"	305.4		"
		372-2	"	268.2		"
		372-3	"	463.5		"
		372-4	"	378.6		"
		372-6	"	203		"
		373-1	"	378.6		"
		371-4	"	529.3		"
		372-5	"	1,024.8		"
		373-2	"	458.8		"
		374-1	"	990.5		"
		371-16	도로	1,179.2		"
		371-6	대	274.6		"
		373-3	"	212		"
		373-11	"	143.9		"
계		19필지		8,397.6		

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 주소	성명
서울 천동 국민학교	강동구 길동	371-1	대	209.2	성동구양정동 10-4	이석기
		372-1	"	371.3	강남구천담동삼익아파트	장기상
			"		11 동 1102 호	
		371-2	"	240.7	강동구천호동 132	이완수
		371-3	"	350.3	"	"
		371-5	"	415.7	"	"
		371-7	"	305.4	"	"
		372-2	"	268.2	"	"
		372-3	"	463.5	"	"
		372-4	"	378.6	종로구명창동 345-34	장옥기
		372-6	"	203	강동구길동 75-9	박홍산
		373-1	"	378.6	강동구천호동 51-7	장원수
		371-4	"	529.3	강동구둔촌동 77-8	방삼남
					강동구길동 230-1	김진일
		372-5	"	1,024.8	여의도동 1-892	정우백외 1인
		373-2	"	458.8	강동구천호동 161-10	황인숙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 주 소	성 명
		374-1	대	990.5	도봉구미아동 403-24	최 관 호 외 2 인
		371-16	도로	1,179.2	서울특별시	
		371-6	대	274.6	상도동 244-57	장 한 덕
		373-3	"	212	종로구사직동 228	남 상 구 외 1 인
		373-11	"	143.9	"	"
계		19 필지		8,397.6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71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
시행허가

1. 서울시고시제 101 호('81.4.4)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시고시제 132 호('81.4.20)로 지적승인된 암사동 451-16의 1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시장)을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제 521 호('81.12.31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7.16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동구암사동 451-

16, 17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종류 : 도시계획사업(시장)

명칭 : 양지시장

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
주소 : 강동구암사동 451-16

성명 : 양지임업(주) 이장수

라. 사업규모

지적 : 1,600.2㎡

건축내역 : 기존 1,653.72㎡

증축 747.11㎡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'82

7.30 - '84.7.30

바. 사용할 토지의 명세

위치 : 강동구암사동 451-16, 17

지적 : 1,600.2㎡

소유자 : 이 장 수

사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(성략)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2 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)
실효필결정

1. 서울시 도시계획규약부 도시계획시설(공원)인 북한삼공원등 7개소공원계획은 건설부고시제 888호(77.7.4) 및 등 고시제 818호(78.12.20) 제 114호(79.4.4)로 제정비결정 및 변경 결정부고시 제 12호(81.12.31)의 원안과 일치함에 따라 하기의 도시계획법 제 12조 등법제 114조 제 1항 등법시행령 제 10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 72호(81.12.31)의 원안과 일치함에 따라 하기의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실효 및 변경결정

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공 도시계획과와 해당지역 관할구청(부설서청, 고양군청) 및 동(현)사무소에 비치하여 일차연에게 보낸다.

1982.7.19

서울특별시장

라.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실효

- 1) 시설(공원) 실효조서: 별첨의 결정조서 내용과 같으므로 이하 가름함.
- 2) 실효사유: 도시계획법 제 14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
- 3) 실효일자: 위의 결정고시후 2년의 되는날의 다음날 ((79.7.9, 80.12.26, 81.4.4)
- 4) 실효도면: 결정도면과 같으므로 이하 가름함.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

1) 시설(공원) 결정조서

구분	구분번호	소재지	면적(㎡)	비	비	면적(㎡)	비
결정	7	북한삼공원	북한삼공원	도봉, 송파, 중로, 석리동, 문정, 잠곡동고당동월곡	44,196,190	·	·
"	21	"	"	구로구 신수, 개봉, 양동, 금계동 신천, 신철동	4,112,000	·	·
"	23	"	남산	금계동 무원동 월곡	2,125,300	·	·
"	제 101-119	북한삼	북산	구로구 동상동, 봉림동	170,700	·	·
"	제 117-116	"	북산	구로구 동상동, 석곡동구동동	1,320,000	·	·

구분	공원번호	공원종류	공원명칭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결정	근08-03	근린공원	와우공원	마포구 창천, 상수동	60,700	재결정
'	근11-01	'	노량진	동작구 노량진, 흑석, 상도, 대방, 본동	464,480	

2) 결정도면 : 별첨 (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15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시고시제 3호 (59.1.18)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서울시 공고 제 237 호 (82.6.3) 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오류국교 진입로확장공사 구간연장에 대하여 실시 계획인가를 득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함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목과,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

이 공고로 갈음함.

1982.7.16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거 요

1. 사업시행지 : 구로구오류동 40 의 4 - 13 의 54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오류국교 진입로 확장공사
3. 사업의 규모 : 도로확장 B = 3-4 → 6 m L = 60 m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인가일 - 82.8.30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도
지조서
7. 토지및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, 설명 : 별첨 토지, 건물조서
첨부 토지 및 건물조서 1 부.

토 지 조 서								
번호	소재지		지목	지적	면적	실제이용상황	소유자	
	동명	지번					성명	주소
1	오류동	40-4	대	149 ㎡	28 ㎡	도로	임용태	오류동 41-1
2	"	41-4	"	644 ㎡	198 ㎡	대	완설창	영등포동 7가 328
3	"	13-54	"	780 ㎡	232 ㎡	"	이승국	오류동 13-54

건 물 조 서								
번호	소재지		물건의 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	실제이용상황	소유자	
	동명	지번					성명	주소
1	오류동	41-4	점포및 사무실	철근콘크리트 평옥개	1층 11.4평 2층 11.4평	1층점포 2층빈칸 (차이)	임용태	오류동 41-1

서울특별시공고제 317 호
 특정열사용기자재
 시공업지정취소
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

제1항에 의거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
 공업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
 제 2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
 한다.

1982.7.16

서울특별시장

○ 취소업체명

취소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용
23호	동진종합기업(주)	추국일	서울중구기교동 123-1	무단폐업
38호	동남공업사	이강원	서울중구민리동 2가 204	"
39호	서전실업(주)	노석용	서울중구민리동 2가 190-30	무단장소이전
66호	대호종합설비(주)	서명훈	서울중구신당동 369-33	무단폐업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20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·S 표시정지처분공고</p> <p>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K·S (한국공업규격)</p>	<p>표시정지 처분하연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7.19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1. 허가번호	1939	1986	1945	2254
2. 허가일자	80.1.14	80.2.12	80.1.21	80.12.27
3. 제조업체명	신일공업사	영남공업사	국일공업사	대륙금속공업사
4. 대표자	이 정 수	권 태 정	권 태 산	오 향 선
5. 소재지	영등포구독산동 612-3	영등포구문래동 5가 19-13	강서구신정동 1동 596-20	영등포구양영동 4가 33-1
6. 품 목	수도꼭지 (가로 꼭지 59 φ)	좌 동	좌 동	수도꼭지 (온냉수 혼합꼭지)
7. 규격번호	KSB 2221	·	·	·
8. 처분기간	공고일로부터 3개월	좌 동	좌 동	좌 동
9. 처분사유	K·S 기준미달	·	·	·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2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사 령</p> </div> <p>◎ 1982년 7월 16일자 령제 373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건축지도과 김 동 환 지방건축기좌 </p> <p>부직을 명함. 5호봉을 급함 종합건설본부 근무를 명함.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령제 374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내 무 국 이 용 두 지상의무기정 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 2, 3호 의 규정에 의거 해임에 처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